

# 日本の 農産物流通構造에 관한 研究 (2)

- 中央都賣市場 成立期를 中心으로 -

姜 景 璿\*

## 目 次

- I. 中央都賣市場의 成立과 構造
  - 1. 序 - 問題의 所在
  - 2. 中央都賣市場法の 成立
  - 3. 青果物取扱資本의 運動法則 = 仲介機能과 價格形成
  - 4. 中央都賣市場의 成立과 都賣人·仲買人
  - 5. 中央都賣市場의 理念과 發展
- II. 中央都賣市場의 成立과 流通構造의 變革
  - 1. 大都市의 地場流通變革 - 全國流通圈의 형성 -
  - 2. 去來機構의 近代化 - 出荷組合運動의 發展 -
  - 3. 系統農會의 販賣斡旋事業
  - 4. 市場商人에 의한 去來組織의 개혁 - 荷受組合運動 -
- III. 結 語

## I. 中央都賣市場의 成立과 構造

### 1. 序 - 問題의 所在

#### (1) 成立의 背景

( 本小論은「日本の 農産物流通構造에 관한 연구(I) - 德川期~明治期를 中心으로」에 이어지는 검토인데 주내용은 中央都賣市場의 성립에 따른 諸變革이 되고 있다 )

\* 農科大學 農業經濟學科 副教授

1923年 中央都賣市場法이 성립하고 1927年 京都市를 비롯하여 당시의 각 대도시에 中央都賣市場施設이 마련되어 이후 일본의 청과물유통의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면 이 中央都賣市場이 어떠한 歷史的 背景下에 형성되어 어떠한 役割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하여 政府 및 地方公共團體는 어떠한 市場對策을 전개해 왔는가: 그 결과 日本의 商業·經濟의 近代化라는 틀속에 어떠한 위치를 찾아하여 왔는가를 본항에서는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中央都賣市場이 만들어지는 發火點(직접적인 계기)이 된것은 소위「米騷動」에 있었다.<sup>1)</sup> 물론 전제 조건으로서의 胎動은 明治期에서도 보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그에 이어서 1918年 米價의 폭등으로 인한 생활난이 원인이 되어 富山縣의 한 漁夫의 부인에 의해 발단이 되고 곧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sup>2)</sup> 이 米騷動을 계기로 하여 물가안정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면서 쌀(米)만이 아닌 生鮮食料品과 기타 日常生活必需品을 염가로 판매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일이 긴급의 과제로 되었다. 그래서 주요 도시에 公設小賣市場이<sup>3)</sup> 건설되고, 더우기 生鮮食料品(靑果物, 水産物, 畜産物을 가리킴)을 취급하는 도매시장의 개선·정비가 필요되었다. 이에 따라 政府는 社會事業調査會를<sup>4)</sup> 조직, 여기에 특별위원회를 두어 1年半이상에 걸친 조사·연구를 거듭한 결과를 정부에 대한 건의로써「中央市場設置要綱」이 제출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中央都賣市場法」의 공포를 본 것은 1923年 3月이며 이후 6대도시에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는 준비가 진행되었다.<sup>5)</sup> 정부에 의해 中央都賣市場法이 제정되기에 이른 역사적 배경에는 앞에서(주로 註1),2),3),4),5)의 참

- 1) 米騷動外에 魚市場改革問題의 계기에 따라 中央都賣市場設立의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 2) 日本은 1914年 第1次世界大戰에 參加하게되며 일본경제는 그때까지의 不況으로부터 一轉하여 好況을 맞아 심한 인플레이에 직면하게 된다. 쌀 값도 1917년부터 급상승으로 전환 1918년에는 1次世界大戰後의 4배에 달하였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전쟁에 의한 일본자본주의의 급격한 重工業化와 寄生地主制에 의한 농업생산의 정체에 의한 것이나, 이때 地主와 委託商등의 매점매석이 크게 성행되어 이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米騷動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군대를 출동시켜 진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 3) 1917年 무렵부터 昇進하는 인플레이대책으로써 公設小賣市場設立이 논의되었으며 大阪市가 맨처음 시장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公設小賣市場設立이 본격화된것은 米騷動을 계기로 하였음은 물론이다. 公設市場은 저렴한 값으로 점포를 貸與하고 그 代價로 小賣商의 營業활동을 법령에 따라 규제(小賣標準價格등을 設定)함으로써 전쟁을 계기로 격화되었던 대도시의 물가 문제로 대응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설시장의 설립은 도시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책적 의의도 주어졌다.
- 4) 물가문제는 米騷動 이후 얼마동안 중요한 정치과제로 되었다. 정부는 1921年 자문기관인 社會事業調査會에 공설소매시장의 진전과 도매시장의 개선에 대하여 자문하였다. (공설소매시장과 도매시장의 정비를 社會事業 내지 사회대책으로써 자문한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中央市場設置要綱」이 제출되었고 1923年의 中央都賣市場法은 이 건의에 의해 立案된 것이다. 本文中에서 자세히 고찰되겠지만 中央都賣市場法을 구체화하려고 한 이념은 이 요강에 잘 밝혀져 있다. 그 주요 내용의 하나는 중앙도매시장의 공설이고, 또 하나는 營業者(都賣人)에 대한 규제이다. 즉 이 요강에 나타나 있는 이념은 공설소매시장을 만들어 거기에서 小賣商을 規制하는 것과 같이 中央市場(=中央都賣市場)을 만들어 거기에서 영업하는 營業者=都賣商(問屋)을 규제하려는 것과 같이 상인의 영업활동에 政府 介入에 의해서만이 生鮮食料品價格이 저렴함과 안정이 실현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다. 이렇게 물가대책을 軸으로 하여 정부의 개입에 의해 都賣商(問屋)制 市場構造의 고정성·폐쇄성이라는 특질을 法令에 의거 의로부터「自由化」하려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吉田 忠:「靑果物の 流通家の光, 家の光協會, pp.90-92.
- 5) 중앙도매시장이 성립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본문에서 밝힌 米騷動과 공설소매시장의 설립, 社會調査事業의 中央市場設置要綱 이외에 魚市場의 構造改革과의 관련 문제이다. 魚市場의 構造改革의 필요성 인식은 일찍부터 動因하고 있었다. 日本의 水産業은 이미 明治末期에는 자본주의적 경영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水産業界의 생산구조 변화=기업화, 대규모 경영화는 그 전부터 행해 온 영세 경영의 魚都賣商(問屋)에 의한 小量去來로 그 모순이 제기되고 있었음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미 明治末期의 시점에서 수산업 생산구조의 변화에 앞장도록 하는 수산물의 유통기구에 개혁이 요청되고 있었던 것이다.

고문을 통하여) 본바와 같이 米騒動 이래 크게 Close-up 되었다. 더우기 그와 같은 움직임을 만들어 낸 條件으로써 세계 제 1 차대전 중에 있어서의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社會 經濟構造의 변동에 주의 를 환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淸日戰爭期<sup>6)</sup>에 있어서의 輕工業 특히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전개 된 第 1 次 産業革命에 이어 露日戰爭期로부터 「世界第 1 次大戰期에 걸쳐 重化學工業의 확립을 軸 으로 第二次 産業革命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도시인구는 거대화하여 도시에서의 생활안정을 도모 하는 것이 기업측에서나 정부당국으로서도 필요하였다. 「成金景氣」<sup>7)</sup>를 謳歌한 1 次大戰中에 諸 物價는 계속 등귀했으나 收入은 그에 따르지 못하였다.

1914 年에 일어난 第 1 次 世界大戰은 일본의 자본주의의 발전에 특히 구조적인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즉 工業部門의 重工業化를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또 海外市場이 급속히 확대되어 공업생산은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 말하자면 이 무렵부터 일본의 독점자본주의는 본격적인 展開期를 맞이했던 것이다.<sup>8)</sup> 또한 공업의 발전은 노동력을 도시, 공업지대로로 吸引하여 도시인구의 증가에로 연결되어 도시화를 더욱 진행시켰다.

그런데 이 사이 공업생산에 있어서의 경제구조가 상기한 바와 같이 급속히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식료품의 시장구조에는 별로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생산식료품의 하나인 청과물을 보면 그 도매단계는 前期의 商人資本의 性格을 갖는 青果都賣商(問屋)이 青果物流通의 仲繼와 價格形成이라는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상태 그대로 꽤 장기적으로 推移해 왔던 것이다. 즉 日本資本主義의 構造的 變化에 相對應하여 연결되지 않는 구태의연한 청과물 유통구조의 존재, 그 모순의 격화로 이에 대한 變혁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상 대략 살핀것이 中央都賣市場을 성립케 하는 社會 經濟的인 背景이었다. ( 직접적인 계기는 참고문헌 註 1), 2), 3), 4), 5), 에서 정리되어 있음 )

## (2) 展開의 概要

中央都賣市場法의 施行에도 불구하고 舊市場의 都賣商은 더욱 더 「市場維持運動」을 전개하는 경 우도 있어 한때는 험악한 정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새로운 中央都賣市場에의 흡수는 既存市場으로서는 死活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및 지방 공공단체에 의해 여러가지 노력이 경주되어 1927 年 京都市, 1930 年 高知市, 1931 年 橫浜市, 同年 大阪市, 1932 年 神戸市, 1935 年 東京市 에 中央都賣市場이 개설되어 나갔다.

이후 1940 年 채소·과실등에 대하여 公正價格制가 실시될때까지는 中央都賣市場은 그 발전기를 맞이 했다. 즉 自由市場의 時代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 最盛期는 1935 年에서 1937 年 무렵

6) 이 무렵은 마침 紡績業에 있어서의 산업혁명이 달성된 단계였다. 淸日戰爭에서의 승리는 戰費 2億圓의 國內散布와 報償金 3億 6000萬圓의 正貨流入으로 산업자금화되어 구매력은 증가되고 해외신용은 증대하여 財界는 好況을 맞아 산업혁명의 완성에 큰 역할을 다했던 것이다. 武藤 誠編: 「日本通史」, 創文社, p. 115.

7) 第 1 次 世界大戰의 勃發에 따라 절호의 戰時景氣를 맞게 된다. 歐美市場에 일본제품이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軍需工業을 위시한 각종 공업부문은 관민할것 없이 생산설비를 확장하였고 특히 海運界는 未曾有의 活況으로 소위 「成金」景氣를 現出하였다. 武藤 誠: 前掲書, p. 117.

8) 井上 晴九: 「日本資本主義の發展と 農業および農政」, 中央公論社, p. 238.

까지였다고 지적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쟁이 중국대륙으로 확대되면서 軍需物資의 증대, 통화 팽창등으로 물가는 점차 등기를 보이기 시작하여 靑果物도 높아만 갔다. 그 결과 앞에 지적한바와 같이 中央都賣市場에도 戰時統制가 가해져 가격의 公正化로 市場 본래의 기능은 상실하기 시작한다. 公正價格制의 실시에 따라 商品의 評價機能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던 仲買人은 그 기능을 상실하여 中央都賣市場 指定區域內的 配給店에 商品을 分荷하는 업무에 한정되었다. 이와같이 1941년에 드디어 仲買制度가 폐지되고 仲買人은 荷受會社(都賣人)·小賣業·場外的 軍需産業등으로 직업전환이 진행된다. 이와 같이 仲買制度의 全廢로 自由經濟를 原理로 한 中央都賣市場은 크게 변모하여 都賣會社도 국가적 규모의 配給統制 實施를 위한 기관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이와같이 1923年 그때까지의 都賣商(問屋) 방식이 否定되어 국가에 의한 시장 재편성이 이루어졌고(中央都賣市場의 成立), 여기에 또 다시 국가의 요청과 강력에 의해 시장은 크게 改變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敗戰後 1945年 11月 靑果·鮮魚에 대한 통제는 한 때 철폐되었으나 그것도 한때이고 1946年 부터 靑果·水産物의 統制令이 발포되어 생산의 절대량이 부족했던 戰後의 혼란기에 가격의 급등을 억제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했다.

나아가서 1947年 연합국 최고 사령부(G·H·Q)는 經濟民主化의 理念(財閥解體·農地改革·勞働政策등)에 입각하여 中央都賣市場의 改革에 착수하였다. 그것은 都賣會社(荷受機關)의 獨占體制를 改組하는 것을 목표로 責任集荷制를 課한 公認 荷受機關을 증설(複數制)하여 亂立된 業者에 의한 적극적인 集荷를 기대하였다. 그런데 亂設된 都賣會社는 責任集荷量에 달할 수 없어 失格 또는 廢業하는 者가 속출하였다.

中央都賣市場은 지금까지 일본경제의 轉換期때마다 改編이 강요되어 왔다. 그것은 德川時代 이래의 전통적인 都賣商(問屋) 制度가 청산되고 새로운 中央都賣市場으로 編成된바 있으며 戰時中에는 仲買制의 폐지와 戰後에는 都賣會社의 亂說등 모두가 商業·經濟에 대한 국가의 強力이 作用으로 비롯된 것들이다. 거기에는 生鮮食料品市場을 둘러싼 국가와 경제의 복잡한 관계가 內在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런데 戰後의 市場統制가 철폐되고, 仲買制가 부활되어 시장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은 1949年에서 50年에 걸쳐서였다. 1950年 한국의 6.25 동란 발발에 따른 動亂붐에 힘입어 中央都賣市場의 入荷量도 격증하여 戰前에 있어서의 自由市場時代 이상의 盛況을 보였다. 1956年에 이르러 戰後의 經濟成長에 따라 일어난 제경제사정의 변화를 고려에 넣어 市場法이 개정되었다. 이것은 中央都賣市場法이 제정되고 나서 33年만의 일로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후 1960年 및 1961年에도 일부를 개정하여 시장 기능을 강화하여 왔으나 中央都賣市場制度의 발본적인 개정이 크게 요청되어 새로운 都賣市場法이 1971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른 都賣市場(中央都賣市場, 地方都賣市場)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이들의 전개과정은 별도로 자세히 고찰될 것임)

## 2. 中央都賣市場法の 成立

### (1) 특 징

이상 위의 앞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公設小賣市場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소매시장의 탄생에 따라 더욱 公設都賣市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獨立小賣商과 都市消費者와의 매매는 소매시장의 창설로 一步近代化 되었지만, 이에 따른 產地·出荷者와 獨立小賣商과를 연결하는 中間流通의 近代化問題가 더욱 긴급 테마로 되어 社會前面에 나타났다.

그러면 먼저 社會事業調査會의 「中央市場設置要綱」에서 나타난 주요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全文 23項目으로 된 이 要綱에는 기본인 방향으로 대략 2가지점이 지적되어 있는데 하나는 中央市場의 公設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의 營業者(都賣人)에 대한 統制이다. 즉 中央市場은 地方自治體에 의한 公設이 基本이어야 한다. (원칙은 그러하나 營利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法人도 개설할 수 있으며-이것은 1956年 동법개정시 삭제된다-, 그 地域內에 類似 私設市場이 있으면 폐지를命할 수 있음) 또한 정부는 지방자치체에 중앙시장의 설치(인구 15만 이상의 도시에)를 명할 수 있고, 그대신 냉장고, 창고등의 부속시설을 포함 재정보조(설비비의 1/3한도내)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강권적 규정이며 사회정책적인 위로부터의 물가대책이라는 색채가 농후하다.<sup>9)</sup> 또 하나는 중앙시장내서의 업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이다. 許可制·保證金の納入義務를 비롯하여 委託販賣의 原則,<sup>10)</sup> 競賣原則, 委託手数料 公正의 原則등이며 더우기 自治體에 의한 포괄적인 감독권도 정해져있다. 또한 中央市場에서는 開設者 스스로가 영업(도매)하든가 또는 지방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자가 영업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中央市場의 公設뿐만 아니라 거기에서의 都賣業者의 公營조차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販賣相對는 小賣人을 原則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仲買業者, 오늘날의 中間都賣業者를 배제하려는 意思가 작용하고 있었음을 뜻한다.<sup>11)</sup>

이상과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中央都賣市場法」이 1923年 3月 成立되었으며 農務省令으로서의 施行細則과 함께 同年 11月부터 시행되었다.

### (2) 制度의 意圖(市場法の 理念)

舊來의 商人=問屋(都賣商)資本掌握下의 市場形態를 변혁한 유통기구의 근대화=단일도매시장

- 9) 中央都賣市場法은 公正한 價格決定施策이라 하기보다 소비자들을 위한 가격 안정 시책으로써 제정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勝賀瀬質: 「青果物流通の 實態と 展望」, 農文協, p.46.
- 10) 都賣業者의 거래는 荷主의 委託品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開設者의 허가를 얻어 買取할 수 있다고 했다. 바꾸어 말하면 도매업자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에 의한 差益金の 收受는 원칙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확실히 한 것이다.
- 11) 中央都賣市場設置의 목적을 물가문제의 해결에 둔 정부는 中間商人·中間商業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中間搾取」로 보았는지도 모른다. 결국 法은 暗黙中에 都賣人의 競賣의 대상으로서 小賣商·大需要者를 想定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모든 거래의 競賣原則(法 14條)은 모순을 보이거나 시행세칙 28조에 仲買人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의 성립은, 기본적으로는 2가지의 機能的 變容을 동반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하나는 差益商人에서 手數料 商人化에의 商業資本의 機能變化(前期的 商業資本의 近代的 商業資本에의 轉化)이며, 또 하나는 流通手段(특히 市場施設)의 私的(商人)資本에 의한 投資로부터 公共投資(市場開設者인 地方 公共團體에 의한 投資)에의 변화이다.

中間經費의 감축이라는 형태로 제기된 前期的 商業資本의 근대화요청은, 中央都賣市場法에 있어서는 거래의 공정성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써 委託販賣, 即日上場, 公開競賣, 手數料以外的 報償禁止 등 거래활동에 대한 일련의 제도적 제규제를 채용하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써 中央都賣市場의 都賣人は 舊來의 都賣商(問屋)이 갖고 있던 諸機能中 荷受와 價格設定이라는 兩機能만을 갖는 존재 - 委託賣買資本(다음에 설명) - 로 되어 여기에 상업이윤은 판매가격에 대한 一定比率의 手數料만을 源泉으로 하게 된 것이다. 즉 中央都賣市場에 있어서의 都賣行爲는, 中央都賣市場法 施行細則 第21條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原則은 委託에 의한 集荷와 그에 따른 手數料 收受만이 유일한 收益形態로 하였다. 都賣人は 商業的 機能을 일체 하지 않는 말하자면 「競賣機械」로서의 역할을 통하여 都賣價格의 公正·底廉·安定을 실현하려 한 것이다.<sup>12)</sup>

한편 流通의 大量化로 촉구된 單一都賣市場의 轉化 過程에 보여준 國家(地方公共團體) = 開設者의 公共投資(市場施設에의), 즉 市場의 公設制는 구체적으로 시장의 개설·운영·감독을 地方公共團體가 담당함으로써 中央都賣市場이 荷主나 仲買 어느쪽에도 특정의 지배권을 갖지 못하게 하여 獨立의 제 3 자적 상업기관으로서의 公共의 性格을 부여하였다. 그럼으로써 舊來의 都賣商(問屋)資本이 갖고 있던 買集·買占機能(그 典型은 水産物에 있어서의 魚都賣商의 買入 前貸制)은 除去할 수 있었던 것이다.

市場公設制는, 類似市場의 금지와 一指定地域·一市場原則의 채용과 더불어 最高 都賣市場形態로서의 中央都賣市場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어쨌든 生鮮食料品 消費需要의 대량화에 촉구된 유통기구의 개혁은, 이로 말미암은 대규모시장시설의 公共投資를 비롯하여 地方公共團體에 의한 中央都賣市場의 開設·運營·監督→그에 의한 절대적인 信用力の 강화→集荷力の 증대→近郊産地에 대신하는 遠隔地 産地의 확대와 商人資本으로 하여금 商品買取資本으로부터 委託資本으로 無機能化시킨 변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로부터의 근대화 과정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기는하나 1927年 京都市를 비롯하는 8大都市의 中央都賣市場의 開設·運營도 底賃金 構造에 규정된 소비시장의 前期性과 寄生地主制下의 小農的 商品生産과에 중극적으로는 규정되어 戰前에 있어서는 충분한 발달을 보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에 의해 上記한 내용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중앙도매시장에 있어서의 商業·商

12) 여기서의 公正이란 새로운 유통기구에 의한 需給均衡價格의 실현을, 底廉이란 流通 margin의 削減을, 그리고 安定이란 需給調整機能의 達成을 의미하고 있다.

人的 集合·集積이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높여 委託·保管·販賣의 과정에서 產地·消費地의 쌍방으로부터 이익을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였다.

당시의 농업경영은 조직력이 약했고, 또한 생산기반도 弱體였다. 그러므로 中間流通의 近代化가 第1次 産業의 生産力發展과 相互補完 關係로 결부되려면 法規制를 근거로 하는 行政의 介入·監視가 불가피했던 것이다. (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

### 3. 青果物取扱資本의 運動法則 = 仲繼機能과 價格形成

中央都賣市場의 설립에 따라 그때까지 多數存在하고 있던 青果物都賣商(問屋)은 한편에서는 荷受資本으로 統一되고, 또 한편에서는 仲買人으로 재편되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즉 이 荷受資本(都賣人)이 資本으로서의 運動法則에 대하여 약간 고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中央都賣市場에 존재하는 青果物의 荷受資本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그 機能面에서 본 性格을, 말하자면 仲繼都賣商業資本이고 그 資本運動은 委託賣買資本의 運動법칙을 지니고 있다. 먼저 仲繼都賣商業資本으로서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產地의 青果物은 生産過程을 거친 後 出荷過程을 통하여 收集되어 自己 機能을 다하고 있는 市場에 吸引된다. 이와 같이 최종적인 소비단계에 이르기 전에 仲介過程이 介在되는데 이것을 仲繼機能이라 한다. 바로 이 仲繼機能을 통하여 青果物의 需給調整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둘째로는, 당연 이와 같은 青果物의 수요와 공급의 조정은 청과물의 가격형성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므로 荷受資本은 價格決定機能까지도 하게 된다.

또한 세째도, 青果物을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仲買人 등 賣買參加人에 引渡함으로써 價格의 實現을 밑받침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들 세가지의 機能은 青果物流通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능들인 것이다. 各種 多數의 청과물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그러면서도 대량으로 생산된 것에 一定의 價格이 붙여져 최종소비자의 손에 원활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이다.

다음에 委託資本으로서의 運動법칙을 고찰해 보기로 하자. 中央都賣市場에 있어서의 荷受資本(都賣人)은 제 기능을 委託資本의 運動으로서 행동하고 있다. 그러면 委託賣買資本이란 어떠한 성격을 갖는 자본이며, 어떠한 運動형태를 취하는가를 살펴보기 않으면 안될 것이다.<sup>13)</sup> 주지되는 바와같이 商業資本의 運動을 단순히 표현하면  $G(화폐) - W(商品) - G'(화폐)$ 로 나타낼 수 있다. 尙業 자본의 대부분은 商品買取 資本으로서 먼저 화폐 자본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 자본은 商品의 購入에 따라 商品資本으로 전환되었다가 이 商品의 販賣로 다시 화폐 자본으로 돌아온다. 이와 같은 자

13) 森下=次也:「現代商業經濟論」,有斐閣, pp.222~227.

본운동을 통하여 商品價値의 실현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平均利潤을 획득하는 것이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 경우 商業資本 運動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오로지 商品의 買入 즉 그 購買와 販賣에 관계되고 있는, 이른바 「商品買取資本」이라 호칭되고 있는 資本部分이다.<sup>14)</sup> 그렇지만 商業資本의 운동은 이와 같이 먼저 商品의 購買를 위해 돌려져, 일단 商品資本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화폐 자본으로 바뀌는 「商品買取資本」의 姿態轉換運動으로는 필요충분한 유통기능을 다할 수 없다. 왜냐하면 商品買取資本이 商品價値를 실현하여 이윤을 획득하는데 필요충분한 유통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賣買機能을 밀받침하고 있는 賣買操作을 빠트릴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우기 賣買가 이루어져 完結되려면 비용이 필요한데 이 비용을 支拂하기 위한 자본도 물론 중요하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여 賣買行爲가 많아지고 거래량 즉 賣買量이 증대할 수록 점점 商品買取資本以外的 資本部分의 필요성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投入되어야만 하는 資本을 「賣買操作資本」이라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이 商業資本은 크게 이 두가지의 資本部分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15)</sup>

그런데 委託賣買資本이라는 것은 商業資本의 일종이기는 하나 앞에서 말한 商品買取資本部分이 존재하지 않는 資本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 기능상 상품매취자본이 불필요하게 되어 있는 자본이다. 그런 의미로 보면, 商業資本으로서의 部分的인 各無機能化가 진행된, 즉 制約이 붙은 資本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어쨌든 이 委託賣買資本은 賣買操作資本만으로 성립되고 있는 資本이다.

中央都賣市場의 荷受資本 즉 仲繼都賣商業資本은 이와 같은 委託賣買資本의 一種이다. 또는 거꾸로 「一種의 委託賣買資本」이라 하는 쪽이 좋을런지도 모른다. 여기서 「一種」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委託賣買資本이라 할까 規格品 그대로의 委託賣買資本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본래 순수한 委託賣買資本은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商品買取資本部分은 존재하지 않는, 그렇다고는 하나 이 자본은 賣買操作資本으로 성립되고 있어 自己의 計算下에 賣買의 受託과 手數料(率)의 設定이 가능하다. 또 賣買의 主體로는 될수 없다하더라도 賣買活動 그 自體는 自主的으로 자유롭게 행할 수가 있다.

그런데 中央都賣市場의 荷受資本의 경우는 약간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賣買操作資本의 一部로써 投入되어야만 하는 建物등 市場施設에의 資本投下는 不必要하다. 荷受資本은 公共施設인 이 市場施設을 비교적 싼 手數料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둘째로 그 대신에 取扱手數料(率)을 自主的으로 設定하는 것은 制限되고 取扱品目과 取扱方法등도 규제되어 있다. 말하자면 最大의 利潤을 추구하는 資本運動의 一部가 制約되어 있는 셈이 된다. 그래서 셋째로, 荷受資本은 中央都賣市場의 市場施設을 排他的으로, 즉 獨占的으로 이용하는 권리가

14) 上同:前掲書, pp.112 이하.

15) 추가하여 危險準備資本이라는 부분도 있으나 여기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므로 생략한다. 上同:前掲書, p.120.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의 靑果物去來는 거의 독점적으로 활동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점에서 미루어 보아, 中央都賣市場에서 機能하고 있는 荷受資本은 어떤 의미에서는 一種의 制約된 자본임과 동시에 다른 의미로는 獨占의인 資本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制提下에 다음을 살펴 나가고자 한다.

이와 같이 自立化하고는 있으나 制約을 받으며 特權을 갖는 委託賣買資本이 資本의 本性으로써 最大限의 利潤을 追求해 나가는, 그러한 자본운동을 행할 경우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할 것인가. 中央都賣市場의 荷受資本의 경우 舊 中央都賣市場法(1971年 새로 제정된 도매시장법 이전의법)에서는 위탁수수료율과 취급품목, 취급방법등이 제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윤의 최대화, 증대화를 추구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3가지의 方策이 고려되었다.

첫째는, 말할나위도 없이 청과물의 취급량, 금액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둘째는 취급량, 금액의 증가와 더불어 청과물거래의 回轉을 신속히 하는, 즉 資本回轉을 促進하는 방법이다. 取扱手數料率이 一定하다고 하면 취급수량, 금액의 증대와 去來資本回轉의 촉진등이 위탁매매자본으로서의 수수료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택하게 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수수료증대는 당연 이윤의 증대로 연 결될 수 있는 것이다. 全國 産地로부터 集荷競争이 격화되어 나가면 특정의 荷受資本과 大型産地와의 사이에 去來結合關係가 강화되어 나가는 현상은 이런 類의 資本運動의 구체적인 발현이고 결과이다. 세째의 방법으로써, 이것도 두말할 나위 없는 것이지만 荷受資本의 經營 合理化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靑果物の 仲繼機能, 價格形成機能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강화와 필요 제경 비의 절감등이다.

荷受資本의 자본운동을 이와 같이 보아 나간다면, 어떻든간에 中央都賣市場이 전국적인 청과물시장내에 단순한 消費地市場이라는 性格에서 集散市場的인 것으로 轉化<sup>16)</sup>하여 地方市場에 대한 轉送(별도로 설명될 것임) 물건이 증대하여 감은 자본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말하자면, 결코 이상한 현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상 살펴 본 바는 中央都賣市場에서 기능하고 있는 荷受資本이 일종의 制約된 委託賣買資本으로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운동 당연의 결과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우기 다음의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委託賣買資本은 이미 고찰한 3가지 點을 향하여 자본운동을 해 나가거나 혹은 자본운동을 제약하고 있는 조건으로부터 脱却하는 것을 찾게 마련인데 다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商業資本으로서의 完全化, 즉 번대기가 나비로 되는 것과 같이 委託賣資本 그 자체의 성격에서 가능한 한 脱却하여 완전한 尙業자본으로서 開花하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1971년에 성립된 새로운 「都賣市場法」은 委託賣買資本으로서의 荷受資本이 資本運動에 있어서 中央都賣市場法(1971年 都賣市場以前의 法)에 의해 오랫동안 지지되어 온 制約條件으로부터 部分的으

16) 山口照雄:「野菜の流通と値段のしくみ」, 農文協, pp.118 이하.

로 脱却하는 것을 法的으로 公認한 것이라고 理解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舊中央都賣市場法은 市場施設에 대해서는 公的으로 投資=建設하는 것을 back로 하여 청과물거래의 공정화를 第1義의 인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것은 舊中央都賣市場法에 규정되어 있던 「出荷者로부터의 委託販賣」「即日 全量上場」「公開 競賣去來」「手數料 以外の 報償禁止」등이라는 諸去來「原則」을 一見하면 알 수 있다.

그런데 新都賣市場法에 있어서는 상기 제거래「원칙」등이 상당한 정도까지 完화되어 몇가지 새로운 去來方法도 채용되고 있는바 여기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하기로 한다.

#### 4. 都賣市場의 成立과 都賣人, 仲買人

##### (1) 都賣人<sup>17)</sup>

앞에서 여러가지로 살펴온 바와 같이 舊來의 都賣商(問屋) 方式을 否定하여 中央都賣市場이 成立되었다. 그 과정에 都賣人 單複問題, 類似市場問題(東京은 市場·配給所를 다수 두어 유사시장을 흡수했다) 기타 보상문제등이 제기된바 있었는데 이하 몇가지 重要점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中央都賣市場法은 指定區域內的 在來市場에서 營業하고 있던 問屋(都賣商)業者를 정비하여 法이 규정하는 都賣人으로 정리하는 것이 시장개설의 필요조건이었다. 그런데 이 都賣人을 各品目(靑果·鮮魚·鹽干魚·乾物·食肉·계란등) 別로 單數로 해야 할 것인지 複數로 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sup>18)</sup>

17) 중앙도매시장의 都賣人(荷受會社)는 생산자 또는 출하자로부터 청과물의 위탁을 받아 이것을 仲買人등에 관매하고 規定의 手數料을 荷主로부터 受取하는 것을 主業으로 하는 者로서 自己의 計算에 의한 買集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1923年의 法은 都賣人의 허가를 都道府縣知事가 할 수 있었으나 그 후의 개정법에서는 農林長官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것은 市場去來의 발전에 따라 荷受會社의 기능이 더욱 중요시되어 그 자격·관리·지도·감독·검증등에 대하여 全國적으로 통일하려는 것이다. 그 주요 기능은 集荷, 競賣, 代金回收이며 성격면에서 소위 手數料商人化된 委託賣買資本이다.

18) 일본 최초의 중앙도매시장 개설에 즈음하여 都賣人 單複問題가 舊都賣商(問屋)의 收容·補償이란 측면에서 제기되어 舊都賣商(問屋)勢力의 壓力下에 都賣人單數制의 方向으로 굳어졌다. 그리하여 都賣人은 都賣(問屋)業者를 우선적으로 또한 독점적으로 수용하여 法人組織化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중앙도매시장법 시행규칙 제 12조에는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제한한 결과의 員數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開設者가 업무규정을 통하여 都市事情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서 비롯되었다.

원래 都賣人의 單複問題의 발단은 1912年의 魚市場法案要綱을 둘러싸 生産者(産業資本)=複數派와 都賣商-問屋(前期的 商業資本)=單數派와의 單複論爭이 있었다.

어떻든 單複의 各主張點을 보면, 먼저 單一制를 주장하는 근거의 최대 사항은 「市場去來의 統制와 指定地域內에서의 標準價格形成」에 있다. 즉 중앙도매시장법의 궁극목적인 지역내의 유통 및 가격의 통제는 單一制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法은 委託引受의 義務, 公開競賣, 手數料限定制 自己 計算에 의한 買集과 販賣의 原則의 禁止등을 규정하고 있어 單一制下에서도 그 실행은 委託者와 賣買參加者와의 無限複數의 去來가 될 수 있으므로 독점의 폐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複數制를 주장하는 측은 單一社會가 방대한 기구하에서 品目別 產地別로 10개상의 다수의 賣場에서 동시에 경매를 행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복수제에 의한 가격형성과 큰 차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單一獨占에 의한 安易하고 橫暴의 經營을 비난하였다. 물론 생산자, 買出人 등은 복수제를 주장하였다. 都賣市場制度 50年史 編さん 委員會編「都賣市場制度 50年史」第三卷, 食品需給研究 センター, pp.52-54.

藤田貞一郎은 「近代 生鮮食品市場の 史的研究」에서 舊來의 都賣商(問屋)의 優위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되었다. 즉 都賣商(問屋商人) 中心의 單數制에 의한 都賣會社의 設치였는데 현실로는, 中央都賣市場法은 … 前期的 資本=都賣商(問屋商人)의 前期的 獨占을 보증하는 법률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法은 生鮮食品生産者=産業資本을 유통과정으로부터 遮斷하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 라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藤田 貞一郎「近代生鮮食品市場の 史的研究」, 清文堂, p.199.

었는데, 현재에도 中央都賣市場에 있어서의 최대 과제의 하나로 되어 있다. 즉 都賣人 單複問題는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여 도매업자를 수용함에 있어 既存의 都賣市場에서 영업하고 있던 多數의 都賣商(問屋)을 單一로 합동하여 수용할 것인지, 複數로 수용할 것인지를 둘러싸 격렬한 투쟁을 불러 일으켰던 문제이다. 결과적으로는 동경중앙도매시장을 제외하면 戰前의 大都市 中央都賣市場은 品目別 單一都賣會社로 대부분 출발했으나 戰後는 GHQ(聯合國最高司令部)의 재벌해체정책·독점금지법·集中排除法등 일련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라 單一獨占會社가 해체되고 複數制로 再出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어떻든 單一 都賣人制로 이루어져 多數의 都賣商(問屋)이 合併하여 部門別로 하나 또는 극히 소수의 都賣會社로 되었다. 대부분의 都賣商(問屋)은 새로운 都賣會社(都賣人)의 株主로 됨과 동시에 仲買人으로서 收容되었다.<sup>19)</sup> 한편 그 전부터 각시장에 분산되어 있던 仲買人도 그대로 대부분은 中央都賣市場의 各部門에 仲買人으로서 入場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法人組織의 大資本 都賣會社(단일 또는 극소수의)와 個人經營의 小資本인 仲買人(몇百人이라는 多數)이라고 하는 즉 荷受都賣人과 分荷와 評價의 仲買人으로 형태적인 확실한 분화가 이루어졌다.

例를 京都市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鮮魚部·鹽干魚部·青果部 모두가 각각 都賣人을 一人으로 하는 業務規定이 市場開業(1927)에 맞추어 만들어 졌고, 仲買人에 대해서도 鮮魚部 120, 青果部 120, 鹽干魚部 110人 이내로 하는 규정이 정하여 졌다. 그리하여 舊問屋(都賣商) 111人的 營業權補償을 現物出資로 하고 그 외 舊問屋(都賣商)의 大業主가 출자하여 만든 京都青果株主會社가 單一都賣人, 즉 荷受會社로 하여 발족되었다.

舊問屋(都賣商)에 대한 補償은 과거의 平均取扱高와 이윤율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청과물의 荷受業務에 대한 것이고(이 부분 몫이 株式으로 出資되었음) 舊問屋(都賣商)이 겸하고 있던 仲買業務에 대한 몫은 별도로 이에 대해서는 新中央都賣市場의 仲買로 收容함으로써 補償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舊問屋(都賣商)의 거의 대부분이 都賣人인 荷受會社의 株主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仲買人으로 중앙도매시장에 수용되었다. 그런데 大問屋(都賣商)의 業主는 仲買人의 店舖를 妻子名義로 경영하면서 同時에 荷受會社의 經營者가 되는 변칙적인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19) 종래의 都賣商(問屋)은 仲買業도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都賣商(問屋)의 都賣權(委託都賣業)을 新會社에 양도하여도 仲買人으로서의 權利가 아직 남아 있다고 하여 都賣商(問屋)業者에게 新市場內 仲買人으로서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2) 仲買人<sup>20)</sup>

中央都賣市場에 있어서의 仲買人は 都賣人(荷受機關)과 小賣人(買出人)과의 사이에 介在하여 產地로부터 無條件 委託으로 중앙시장에 보내온 청과물을 대량 일괄 사들여 그것을 小賣商 기타 買出人에게 細分販賣(分荷)를 하는, 즉 사회적 수요와 공급과를 接合하는 接點에 위치하여 貯水池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앞서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1923年의 市場法에는 仲買의 業務에 관한 특별의 規定이 없었으나<sup>21)</sup> 얼마 후 施行細則에서 買出人으로, 그후 1956年 改正 市場法에서는 仲買人の 명칭이 정식으로 등장했다가 1971年 새로운 都賣市場法에서는 中間都賣業者로 되었다. 그러면 그 기능과 성격을 요약해 보기로 한다.

仲買人は 都賣會社와 買出人과의 사이에 몇 百人이 多數存在하여 各業種別로 專門化하여 自己 計算과 才覺으로 같은 仲買人끼리 심한 경쟁을 벌리면서 적정가격으로(評價機能) 사들여 단시간 內에 대량의 식료품을 買出人에 分荷販賣(分荷機能)를 자기 책임하에 담당하였다. 여기에 分荷란 단순히 大量의 것을 몇몇 少量의 것으로 나누는 量的인 것만은 아니다. 生鮮食料品の 分荷란 食生活의 모든 形態에 따른 여러가지 규모의, 그때 그때의 市況(天候, 季節, 日程 등)에 알맞는 品質(品種, 크기, 鮮度, 맛 등)과 적당한 가격에 따라 分荷한다고 하는 量과 質의 복잡한 조합에 의한 分荷인 것이다. 그래서 評價機能·金融機能·價格調整機能 모두가 이 分荷를 반영한 기능인 것이다. 이러한 仲買經營의 多樣性이 시민의 식생활의 다양성과 풍부성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 여기에 仲買業의 分業化·專門化의 근거가 주어지게 된다. 사실 중앙도매시장의 도매회사에 다수의 판매원을 요하는 小賣商에의 分荷業務를 요구하는 것은 採算上 無理이다. 都賣會社는 多數生産者의 受託販賣代理人·手數料商人이므로 본래의 商業資本 즉  $G$ (화폐) -  $W$ (상품) -  $G'$ (화폐)의 운동을 반복하는 差益商人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都賣會社가 행하는 競賣販賣는 生産者代理人으로서 행하는 업무이다. 그러므로 都賣人の 手數料는 생산자로부터 收受할 수 있어도 사가는 쪽으로부터는 어떠한

20) 舊市場制度에 있어서의 都賣商(問屋)과 仲買人の 관계는 중앙도매시장의 都賣會社와 仲買人과의 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舊市場의 都賣商(問屋)은 荷受業을 주로 하는 것은 都賣會社와 마찬가지로나 委託에 의한 것 외에 買集에 의한 거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또 판매방법도 競賣뿐만 아니라 相對去來도 하였다. 그리고 仲買人に 파는 것 외에 小賣人에도 직접 少量 分荷販賣도 함으로써 都賣商(問屋)은 都賣業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仲買人は 그 補助者로서 都賣商(問屋)의 業務中 選別, 分荷業務의 일부를 분담하는 데 멈추었다. 都賣商(問屋)數가 조합규약으로 制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平均에 의한 집하량의 확대가 판매면에 있어서의 補助者로서의 仲買人을 발생시키고 또한 증대시킨 원인이 되었다. 生鮮食品은 부패성이 강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되어야만 한다. 都賣商(問屋)이 각자의 集荷品 全部를 신속하게 직접 小賣人에 少量分荷販賣하기 위해 장소, 종업원을 常時 갖추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不經濟的이다. 바로 여기에 專業仲買人에 再委託하여 판매시키기도 하고 競賣 또는 相對로 專業仲買人에 一括 大量 販賣했던 것이다. 東京都:「東京都 中央都賣市場史」, 下卷, pp.25 - 26.

그런데 單一 또는 극소수의 都賣會社와 多數의 專業仲買人이 탄생되면서 앞서의 主從關係는 없어지고 專門化하여 選別·評價·調整(分荷)·金融 등 多方面에 걸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21) 中央都賣市場法 立法者가 최초의 목표로 한 것은 都賣人(問屋)을 大都市의 中央都賣市場에 각 품목별로 50人 限후 수용하고 仲買人은 省略하려고 하였지만 나중에는 정반대로 單一都賣人制와 多數專業仲買人制度가 확립되고 말았다.

보수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仲買人は 競賣方法으로 都賣人으로부터 사서 이것을 少量씩 分荷하여 小賣人에게 판매한다. 즉 적어도 G-W-G'의 운동을 하는 전형적인 상업자본(差益商人)의 성격을 갖고 있다.

참고문<sup>21)</sup>에서 약간 언급한 바 있으나 中央市場의 成立을 「都賣市場의 一大革命」이라고 하는 表現을 쓰고 있는 바<sup>22)</sup> 이를 음미해 보면 긍정이 간다. 「中央市場의 創設期에 있어서 仲買人이 市場開設前의 問屋(都賣商)業務와는 단절된 형태로 中央市場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로서 새롭게 창출되었다」는 이유는 多數亂立의 都賣商(問屋)을 單一都賣會社로 통합하는 경우에 결정적으로 荷受行爲와 選別 分荷行爲를 단절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仲買人이 自己計算에 의해 選別·分荷業務를 담당할 때 가장 능률적으로 分荷되고 買出人에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單一都賣會社는 選別·分荷行爲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이를 담당하는 多數의 專業仲買人이 존립하게 되어 이들의 상호경쟁에 의해 공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기구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都賣會社가 受託責任을 원활히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多數仲買人에 의한 自由競争이 밀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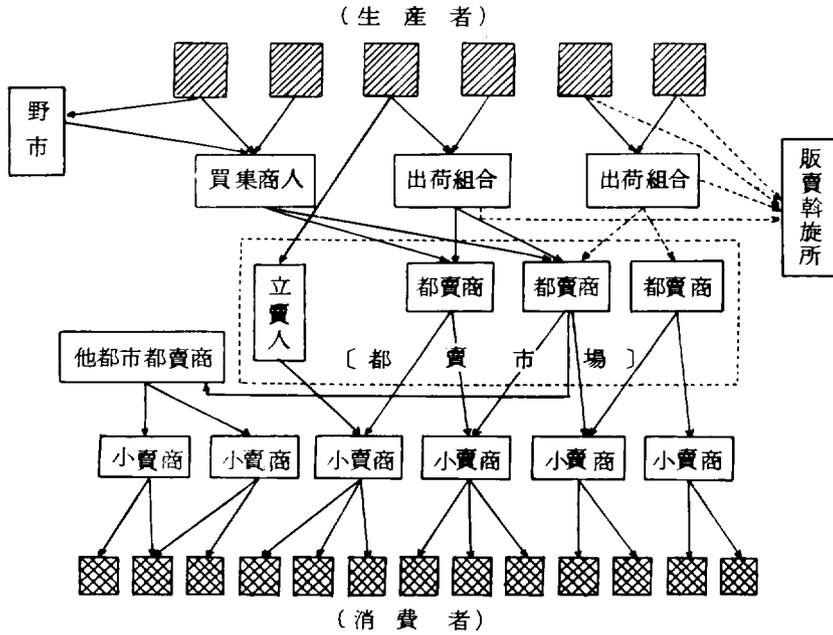
이와 같이 都賣人和 仲買人을 對比하여 보면 都賣人은 出荷者의 代理機關과 같은, 性格적으로는 手數料業者에 대하여 仲買人은 그 risk의 부담에 따라 差益商人이라는 것이다.<sup>23)</sup>

참고로 中央市場을 구성하는 業者와 그 기능(그림 I-3) 및 中央都賣市場 開設前의 青果物流通經路(그림 I-1)와 開設後(戰前)의 經路(그림 I-2)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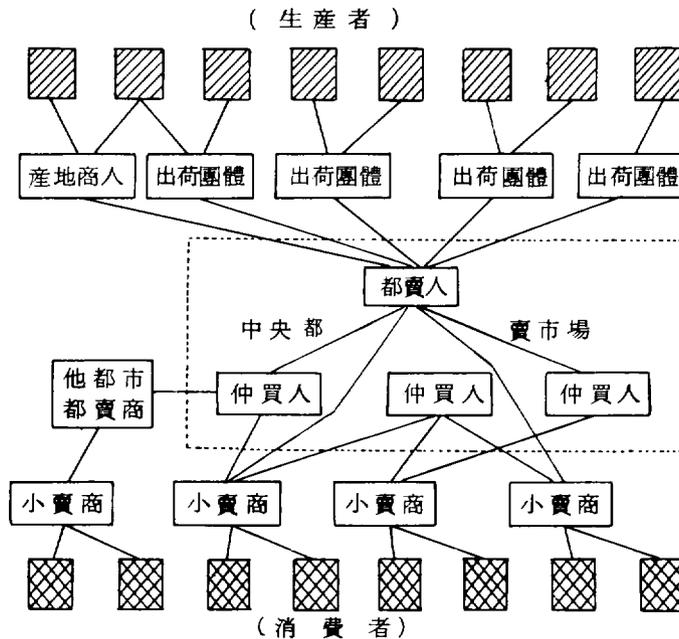
21) 作逆洋太郎; 「近代 大阪 における 流通機構の 再編成」, 清文堂, p.303.

22) 그런데 戰前은 대부분 보여준 單一都賣人의 경우 특정의 생산자와 특수한 관계를 갖지 않았고 생산자에 종속하는 것도 없었다. 그러므로 都賣會社의 株主는 대부분 仲買人이었기 때문에 생산자에 대한 독립성이 유지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都賣會社는 自律的인 販賣代理機關이고 생산자보다는 仲買人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仲買人은 都賣會社의 株主로서 회사의 방침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다. 그래서 仲買組合의 존재를 도매회사는 무시할 수 없었다. 도매회사 重役이 되는 조건은 仲買人和 얼마만큼 신망이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을 만큼 仲買人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戰前의 單一都賣會社와 仲買人과는 자동차의 양바퀴와 같은 관계로써 公正한 도매가격을 형성하였지만 그 주역은 仲買人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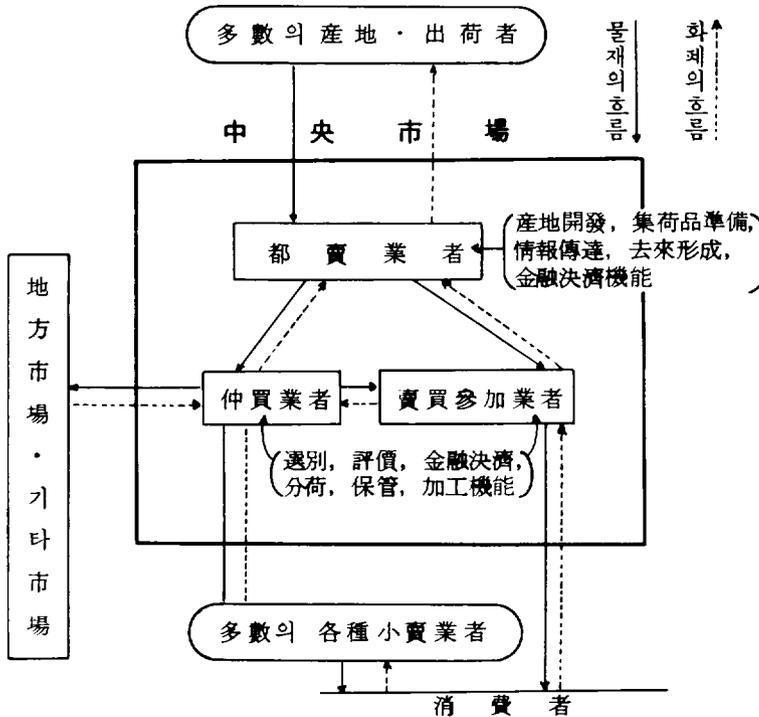
〈 그림 I - 1 〉 中央卸賣市場開設直前の 青果物流通經路



〈 그림 I - 2 〉 戰前大都市の 青果物流通經路



< 그림 I-3 > 中央市場을 構成하는 業者와 그 機能



### 5. 中央都賣市場의 理念과 發展

中央都賣市場이 기초로 했던 理念은 原子論的인 경쟁구조를 전제로, 公的 性格을 농후하게 자니는 荷受會社로 하여금 競賣機械와 같은 기능을 철저히 수행케함으로써 生鮮食料品價格의 公正·底廉·安定을 실현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中央都賣市場은 既存市場 舊都賣商의 出資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그 代表에 의해 경영되는 都賣會社를 都賣人으로 하고 舊都賣商 대부분이 그대로 仲買人으로서 發足할 수 밖에 없었다. 中央都賣市場에 들어 온 舊都賣商의 意圖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特權을 밀천으로 하여 무너져가는 生産者로부터 小賣商까지의 閉鎖的 固定的 關係를 再建하려고 하는데 있었음은 확실하다. 競賣機械로서의 철저성등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런면에서는 中央都賣市場法의 理念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이미 生産者는 產地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여러가지면에서 舊都賣商(問屋)과 결부되어 있었고 小賣商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였다. 이와 같은 舊都賣商(問屋)을 收容한 中央都賣市場에 있어서의 需給構造는 原子論的인 完全競爭的 狀態로부터 멀어질 수 밖에

없었음은 당연한 것이었다. 仲買人の 일부가 荷受會社の 경영자라는 관계하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밖에 없다.<sup>24)</sup> 물론 이와 같은 前期의 獨占에 대응하여 郡, 縣單位の 共同出荷組를 결성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고찰은 달리하게 될 것이다.

중앙도매 시장이 이와 같은 상황하에 그 주어진 임무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荷受會社에 의한 產地開發, 수요 확대, 需給調整, 物的流通의 개선등등 商業的活動의 적극 전개로, 나아가서는 賣上增大와 經費節減의 경쟁속에 이루어지는 私企業의 營利活動에 기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中央都賣市場法은 都賣人の 상기와 같은 私企業의 營利活動을 크게 규제한다기 보다도 오히려 금지하고 있었다. 이 규제는 반드시 法的理念에 입각한 것은 아니나 都賣人の 單數制가 택해짐으로써 보다 강화되었다. 즉 單數制로 행정의 감독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 따라 중앙도매 시장의 荷受會社는 그 상업적 활동이 기본적으로 제한되어 無條件 無差別로 受託된 물건을 競賣에 붙여 販賣하고 一定率의 手數料를 受取할 뿐이었다. 無條件 無差別의 受託이 강제되었다는 것은 그런 限 都賣商(問屋)制 市場構造의 閉鎖的 固定的 連鎖의 一選이 「自由化」된 것임을 뜻한다. 市場에 익숙하지 못한 생산자가 共同販賣組織을 통하여 出荷하여 온다해도 荷受會社로서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 더불어 중앙도매 시장이라는 流通施設 즉 立地條件·交通機關 기타의 物的流通條件 등이 정비되어 대규모화 됨으로써 생산자의 공동에 의한 選別·輸送의 有利性을 크게 증대시켰다. 이런 점들이야말로 中央都賣市場制度가 都賣商(問屋)制 市場構造에 미친 최대의, 그리하여 결정적인 영향되었다.

한편 荷受會社는 受託된 물건을 競賣에 붙여 受領된 代金を 荷主에 송금하는 것으로 족하였다. 靑果物의 競賣란 것은 2, 3일 후 까지의 入荷豫想과 小賣店에서의 賣上豫想을 전제로 하면서도 當日 入荷量의 全量을 仲買人에 팔아 넘기는 과정에 최고가격을 발견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그것이 어떠한 水準이거나 또한 매일 어떻게 변동하든 荷受會社는 하등의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 방침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수급조정에 따른 가격안정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모두 出荷者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都賣人の 企業形態를 株式會社로 하고 또한 各都市의 中央都賣市場間의 (集荷)競爭을 自由化한 것은, 商業的 農業이 아직 불충분했던 戰前段階로서는, 그 판매면에서의 無責任體制와는 대조적으로 集荷面에 있어서는 상업적 활동을 荷受會社에 책임지워 놓은 것이다. 荷受會社는 취급량의 증대로서만이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舊都賣商(問屋)時代 以上の 「產地開發 指導」가 필요했다.

24) 都賣商(問屋)制 市場構造는 都賣人·仲買人·小賣商의 「擔着」으로써 中央都賣市場에도 가지고 들어왔다. 한 예를 보면 京都市 中央都賣市場의 청과물취급량의 8할 이상을 차지하는 京都靑果物株式會社의 창립자는 1927年 市場開設 무렵에는 父가 會社의 常務取締役으로 취임하고 子息의 이름으로 仲買人을 개업했고 그 동생은 소매점도 겸영하였다. 이와 같이 一族이 荷受會社, 仲買人, 小賣商을 겸영하고 있는 예는 그당시는 결코 드문 일은 아니었다. 古田 忠: 前掲書, p.111.

中央都賣市場의 荷受會社는 이와 같은 모순을 안고 있는 존재였고, 더구나 그것이 舊都賣商(問屋)을 改組하여 收容했다고 하는 사실에 따른 矛盾이 추가되었다. 都賣商(問屋)制 市場構造라는 특징의 몇몇은 그 형태를 바꾸어 中央都賣市場에 가지고 들어 오는 바 되어 이런 것들을 拂拭하는 데에는 時間을 필요로 했다. 즉

中央都賣市場의 개설 이래 荷受會社는 內紛에 고민하면서 현금거래의 강제와 내부조직의 정비에 따라 소위 「癒着關係」를 단절하고 荷受會社의 自主性を 확립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中央都賣市場이 舊都賣商(問屋)制 市場構造의 殘存을 拂拭하는 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역시 戰時統制(1941~1945)에 의한 中央都賣市場 내지 荷受會社의 統制機關化 및 敗戰後의 中央都賣市場 「自由化」= 都賣人 複數制의 導入에 따른 혼란과 경쟁이었다.

1941年 정부는 靑果物의 본격적인 배급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仲買人制度가 폐지되고 都賣會社는 指定 荷受機關으로 지정되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은 統制經濟의 官僚支配가 경제관계에 남아 있던 前近代의 人間關係를 解消하여 舊都賣商(問屋)制 市場構造를 어느 정도 瓦解시켰다는 것이다.

敗戰後는 經濟民主化政策의 연장의 하나로 配給統制 會社가 해산되고 中央都賣市場에 都賣人 複數制가 도입됨으로써 荷受會社의 亂立과 심한 경쟁이 비롯되었다.

이렇게 1945~55年 사이의 심한 생존경쟁은 戰後의 諸改革과 混亂된 사회현상에 발 맞추어 中央都賣市場에 남아 있던 舊都賣商(問屋)制 市場構造의 殘存을 크게 후퇴시켰다.

이후 經濟의 高度成長과 그에 따른 商業的 農業의 發展을 맞이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市場再編이 진행된다.<sup>25)</sup>

## II. 中央都賣市場의 成立과 流通構造의 變革

### 1. 大都市의 地場流通 變革 - 全國流通圈의 형성

여기서는 中央都賣市場의 성립에 따라 전국의 生鮮食料品 生産市場構造에 어떠한 변혁을 가져왔는가에 대한 검토를 해 보고자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生鮮食料品의 流通市場史에서 보면 중앙도매시장의 성립은 대도시의 수요를 배경으로 市内 및 周邊에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大小 여러 형태의 시장을 중앙도매시장법에 의거 統一再編하여 一指定區域에 一市場으로 하고, 종래의 都賣業者·仲買業者를 통합재편하여 중앙도매시장에서의 都賣人·仲買人으로 영업하도록 하였다. 統一合理化의 효과는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25) 古田 忠: 前掲書, pp.108-117.

따라 종래의 出荷販賣機構에 특별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그들 出荷機構에 직접 영향을 끼친것은 역시 대도시에 있어서의 人口增加와 그에 따른 수요의 증대·집적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중앙도매시장법에 의한 市場의 出現은, ① 종래로부터 去來의 상대방이었던 都賣業者와 仲買業者의 再編에 따라 어떻게 합리화 되었고 ② 법률적 근거에 입각한 信用이 保證되어 代金 回收가 확실하고 또한 신속하게 되었으며 ③ 中央都賣市場에의 출하가 더욱 촉진되었다는 점은 경제의 당연한 원리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종래 시장거래 관행만을 신용으로 하여 불안정한 출하를 해왔던 農畜水産業者 및 團體는 市場信用의 확립, 法的 根據에 의한 去來물의 확보, 代金回收의 확실성에 의해 안심하고 그 생산물을 중앙도매시장에 출하할 수 있게끔 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市場의 近代化와 그에 따른 人口의 都市集中, 需要의 集積은 생산 출하자에 새로운 생산의욕을 불러 일으켜 상품화 작물의 증산, 계획적 출하체제의 강화에 의한 소득증대 등의 노력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sup>26)</sup> 생산증가는 결국 市場指向의 증가 및 出荷團體의 증가를 가져왔다. 참고로 1924年의 中央都賣市場 出荷目的으로 한 農畜水産物 出荷團體(補助金 交付團體) 및 1927年 이들 團體의 주요취급품목별 조합과 그 생산액 및 출하액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27)</sup> < 표Ⅱ-1, 표Ⅱ-2 >

&lt; 表Ⅱ-1 &gt;

市場出荷農水畜別 團體數(1924)

(取扱額 및 平均單位: 萬圓)

種 類 別	農 産 物	水 産 物	畜 産 物	計
出 荷 團 體 數	697	43	131	871
取 扱 額	3,665	1,535	626	5,826
平 均	5	36	5	7

(註) 商工省으로부터의 補助金 交付團體(商工省調査)

26) 1924~1930의 農林統計表에서 중앙도매시장 취급품목을 집계하여 1년간 취급액을 산출한 것을 보면, 당시 6대도시(東京 大阪 등) 중앙도매시장의 취급총액은 약 4억圓 기타 도시의 소비량은 3억圓이므로 전국총생산액 10억圓中 7~8억圓이 6대도시의 수요로 추계되어 있다. ; 東京市政調査會: 「農村協同組合と大都市中央都賣市場」, p. 92.

27) 上同: 前掲書, p. 98.

〈표Ⅱ-2〉 主要品目別 出荷團體의 成績(1927)

(單位: 萬貫)

品目別組合	生産額	出荷額	出荷率%
토란組合	461	112	24.3
감자 "	2,411	116	4.8
우엉 "	140	62	44.3
파 "	252	147	58.3
양파 "	147	28	19.0
수박 "	2,879	1,065	37.0
고구마 "	7,304	1,864	25.5
축순 "	194	161	83.0
사과 "	345	211	61.2
배 "	182	126	69.2
감 "	166	105	63.3
감귤 "	1,654	1,622	98.0
雞肉卵 "	127	67	52.8
김치 "	123	98	79.6

(註) 「横浜 中央都賣市場 30年史」

그런데 상기표〈표Ⅱ-1, 표Ⅱ-2〉는 중앙도매시장의 개설 또는 開設氣運에 따라 각종의 出荷組合이 결성되어 각각 당시의 조합별 출하율·상품화율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당시의 양과출하율이 특히 낮았던 것이 눈에 띈다.

이와 같이 中央都賣市場法의 제정 공포 및 대도시에서의 개설에 따라 과실 생산판매의 전망이 밝아지면서 종래 불안정때문에 그렇게 진전되지 못했던 과실의 공동판매(공동선과, 등급화등) 공동출하를 더욱 촉진시켰다.<sup>28)</sup>

1926年 이후에 들어서서 대도시에 있어서의 중앙도매시장 개설이 상품생산의 증대와 產地體制의 강화, 有名産地의 형성에 끼친 역할은 큰 것이었다. 시장개설에 따른 全國生産地 體制의 확립과정은 다음 2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28) 중앙도매시장법 시행규칙 및 업무규정에 따라 代金の 확실·신속한 지불은 중앙도매시장 출하에 대한 크나큰 매력이었다. 종래 시장의 불안정, 불확실한 예가 많았던 사실에 비하여, 이에 따라 출하량의 증대, 공동출하의 촉진등에 끼친 영향은 컸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제 1 단계는 人口集中·大都市에 있어서의 農畜水産物의 수요집적과 法制的으로도 정비된 근대시장의 확립은 「Thünen의 孤立國」 構想 그대로 생선식료품의 상품직 특질에서 오는 수송과 판매 거래시간의 제약은 우선 도시근교의 地場生産을 자극하여 도시근교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켰다.

제 2 단계는 대도시에의 급격한 人口集積에 따른 대도시권의 팽창, 근교농지의 빠른 宅地化, 工場化에 의해 近郊農業生産地帶의 생산조건이 변화하여 그 생산지대를 근교로부터 外側으로 확산시킴과 동시에 適地適産에 입각한 채소·과실의 主産地 特産地의 형성을 촉진시켰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송수단의 혁명이라고도 할 만한 자동차의 발전 보급, 그에 따른 도로망의 정비등으로 이른바 「Thünen 圈」은 各 都市市場 종래의 出荷圈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확대됨으로써 근교로부터 원격화를 촉진하였다.

중앙도매시장법의 제정으로부터 1930년 무렵까지는 大都市 指向 채소의 공급은 종래 시장주변의 근교생산물이었던 것이 遠距離 特産地의 出荷物로 바뀌어 나갔다.<sup>29)</sup>

이렇게하여 중앙도매시장 개설과 함께 全國 特産地의 생산이 자극되고 그 상품화의 확실성은 점차 全國에의 出荷가 증대하게 마련인데 이것이 유통기구에 끼친 영향은 컸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 2. 去來機構의 近代化 - 出荷組合運動의 進展 -

중앙도매시장의 성립에 따라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産地의 出荷機構였다. 중앙도매시장법의 都賣人에 대한 엄격한 去來規制와 함께 생산자의 단결에 의한 共同出荷組合의 結成은 생산자와 상인간의 거래를 公正 明朗化하고 유통기구의 근대화를 진진시켰다. 생산자의 無知나 未組織을 이용하여 상인의 기만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어지고 만것이다.

그러면 共同出荷의 形成 發展에 대하여 정리해 보기로 하자.

靑果物을 보면 1897 무렵 까지에는 出荷團體의 設置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는데 이후 邑面, 部落單位의 組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특히 1900년의 重要物産同業組合과 産業組合의 公布에 따라 郡單位의 同業組合과 邑面單位의 産業組合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지만 실제의 生産改良과 販賣改善에 나서는 일은 극히 적었다. 1912년 이후에 들어서면, 특히 1918년쯤 이후 생산개량과 검사·포장·수송·판매의 개선에 대한 활동이 활발하여져 出荷團體 특히 任意組合의 數가 급증하

29) 결국 特産地 채소가 廣域圈化하는 즉 시장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① 포장, 선별이 정연하고 토질, 기후관계의 好適에 의한 품질의 우수성, ② 수송량의 증대, 공동출하등에 의한 수송경비의 상대적 저하, ③ 가격과 품질관계도 소비자 선택의 주관적 欲望度の 均衡 등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당시 철도화물 운인의 底廉은 遠隔化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되었다. 東京都의 채소의 경우를 보면 1921년에는 地元東京이 50%를 차지하고 여기에 근교지역을 합치면 94%에 달했으나 1936년의 중앙도매시장개설 직후에는 出荷地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東京 22%를 首位로 인접근교까지 합쳐서 64%정도로서 그 地位는 크게 저하하고 中間産地, 遠隔地가 진출하고 있다. 袴谷光晴: 「中央都賣市場の 成立と 展開」, 白桃書房, p.178.

었다.<sup>30)</sup> 帝國農會 調査에 의하면 1925年度에는 延 1354 團體가 靑果物을 취급했으나 1927년에는 3317 團體로 2.5 배 가까이 증대하였고, 더우기 1929년에는 6215 團體로 늘어났으며 그중 채소 취급단체가  $\frac{3}{4}$ 을 차지하였다.<sup>31)</sup> 한편 共販率을 보면(1929年) 채소는 16.6%로 낮고 과실은 36.2%로 상당히 높다. 이후 1932년에는 채소(전국) 33%, 과실 40%로 1936년에는 靑果物全體의 공판율이 産業組合 11.6%, 任意組合 47.0%, 合計 約59% 달하였다.<sup>32)</sup> 이와 같이 共販率이 현저히 높아진것은 공황 대책으로서 組合擴充政策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서도 누누이 설명되어 온 바와 같이 원래 中央都賣市場制度는, 직접적으로는 大都市에 있어서의 都賣流通構造의 變革을 목표로 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生産地에 있어서의 供給體制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었다. 中央都賣市場은 都賣商(問屋)이라고 하는 중래의 荷受機關을 근대화, 대형화한 것으로서 새롭게 탄생된 都賣人은 例外없이 株式會社로 되었고, 더구나 대부분이 一市場에 一都賣人이라고 하는, 형태 상으로는 獨占體였다. 이와 같이 集中된 荷受體制下에서는 당연히 이에 대응한 매일의 대량공급이요 청되었다. 그것도 되도록이면 大型化된 出荷機關이 대량으로 통합하여 계획적인 連續出荷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형성이 요구되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出荷團體의 설립과 진전이 더욱 크게 요망된 것은 당연하였다. (개개 생산자의 규모는 영세하였지만 出荷規模는 郡·縣 單位로 커졌다.)

위에서 대체적인 共同出荷관계를 고찰하였으나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산물의 출하단체수는 매년 늘어나 취급량도 커졌는데 그 중에서 靑果物에 관한 것을 보기로 한다. 商工省의 조사에 의하면 1928년부터 10年間に 團體數는 2000여개에서 7000여개 가깝게 늘어났고 取扱高는 5,700萬圓에서 12,300余萬圓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동안 販賣組合의 Share는 여전히 낮으나 증가 템포는 出荷團體의 평균율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靑果物販賣의 共同化가 진전된 배경에는 생산자 자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었음은 물론이나 農商務省(후에 商務省)의 補助金交付에 의한 出荷團體設立 援助, 그리고 農林省의 補助金交付에 의한 農會의 販賣斡旋施策의 강화로 공동출하가 신장되었다는 점과 이 사이에 産業組合의 조직정비가 진척되어 뒤 떨어진 販賣事業을 촉진시키는등 종합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여기에 共同出荷와 表裏關係에 있는 個人出荷와 商人에 의한 出荷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30) 日本園芸中央會編：「日本園芸發達史」. pp. 568~569.

31) 飯塚浩二編：「神田市場史」, 上卷, p. 1096.

32) 上同 : 「神田市場史」, 下卷, p. 203.

## 〈표Ⅱ-3〉 6大都市의 農產物流通 狀況 (1932年)

單位: %

		米	果實	蔬菜
出荷者別	生産者團體	23	52	43
	生産者個人	0	10	27
	同業組合	-	7	-
	產地商人	53	29	28
	他都市市場業者	24	2	2
	計	100	100	100
荷受機關別	市場	35	99	89
	市場外都賣商	57	1	5
	小賣商	8	0	2
	直接消費者	0	0	4
	計	100	100	100

註 1) 果實 14 品目, 蔬菜 20 品目.

2) “主要都市農產物需給狀況”, 「農務時報」70號, 1934.

〈표Ⅱ-3〉은 6大都市에 있어서의 農產物流通 狀況 (1932) 인데 靑果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들 수 있다. ① 出荷者別로는 生産者團體가 產地商人을 눌러 절반에 가까운 Weight 를 점하고 있다는 점, ② 個人販賣도 과실은 10%에 불과하나 채소는 產地商人에 상당하는 27%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며, 荷受機關別로는 市場이 압도적이라는 점 등이다. 이 중 生産者團體는 그대부분이 任意의 出荷組合<sup>33)</sup>으로 農會의 販賣斡旋과 결부되어 발전되어 온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될 것임)

나아가서 主要品目別로 1935年度の 것을 보면 〈표Ⅱ-4〉와 같은데 먼저 채소의 출하자별 출하비율을 보면 (평균) 산업조합 5.6%, 임의조합 46%, 상인 32.5%, 기타 14.9%로 되어 있다.

1929년의 共販率 16.6%에 비교하면 산업조합+임의조합= 51.6%로서 급템포의 共販率 向上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과실류는 平均 산업조합 10.9%, 임의조합 46.6%, 상인 35%, 기타 7.5%로 나타나고 있다.

33) 생산자가 소비시장에 직접 출하하여 產地商人을 排除하는 형태는 1924~5년에 이르러 급속히 발전하였다. 즉 생산자 스스로가 선별·포장하여 직접 소비지의 都賣商(問屋)에 출하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당면 수송비는 자기부담이다. 그런데 영세 생산자가 개인으로 출하하는 것은 수송면 하나만 보아도 不經濟的일 수 밖에 없었다. 바로 여기에 共同出荷의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어 出荷組合 組織이 대두된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出荷組合은 항구적인 조직이 아니라 同一品目の 생산자가 그 季節에 공동으로 출하, 수송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季節이 끝나면 해체하는 것도 있었고 加入脫退는 自由였다. 그러므로 任意的인 형태의 것이었다. 勝賀瀨實: 前掲書, pp.17~18.

< 丑II-4 >

青果物の移出者別取扱比率

(單位%)

品 目	移 出 者					
	産 業 組 合	其 他 出 荷 團 體	出 荷 團 體 計	商 人	其 他	計
고 子 마	8	31	39	54	7	100
감 자	9	28	37	45	18	100
양 파	14	24	38	60	2	100
수 박	2	58	60	28	12	100
호 박	1	59	60	22	18	100
배 추	1	60	61	15	24	100
양 배 추	4	53	57	25	18	100
죽 순	6	55	61	19	20	100
溫州 밀 감	16	33	49	45	6	100
夏 橘	17	40	57	37	6	100
사 과	11	41	52	45	3	100
일 본 배	26	50	76	14	10	100
단 감	3	32	35	53	12	100
포 도	3	79	82	12	6	100
밤	11	43	54	37	9	100
복 송 아	9	72	81	11	8	100

(註) 帝國農會「農業年鑑」(1937年版)

한편 中央都賣市場의 開場에 따른 都賣會社와 仲買人과의 大量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產地로서는 ① 품종의 개선, 선별의 엄격화에 의한 상품 품질의 향상, ② 大量출하와 규격의 통일, ③ 出荷期間을 통하여 相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連續出荷의 필요등을 절감하였다. 少量의 規格不統一의 商品은 대부분 仲買인이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類似市場에 보내지기도 하였다.

3. 系統農會의 販賣斡旋事業

大量出荷를 指向하는 出荷組合의 설립과 수송기관의 정비에 따라 청과물의 生産地帶는 점차 地理적인 제약이 약화된다. 더우기 產地도 適地適作物의 傾向(主產地 形成)이 뚜렷하였기 때문에 大都市의 都賣商(問屋)이 이들 遠距離 产地와 직결하는 결향이 나타났다. 생산자도 개인 혹은 출하

조합에 의해 대도시의 都賣商(問屋)과 결합하는 것을 희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都賣商(問屋)에 물건을 내보내었지만 싼값에 계산되어 나오기도 하고, 代金送金이 지연되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는 이유를 붙여 代金を支拂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出荷組合의 代表者가 먼거리에 여비를 들이면서 代金回收를 위해 나서지 않으면 안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가 매년 계속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農業團體 즉 系統農會<sup>34)</sup>는 이에 대한 對策을 생산자로부터 요구받기에 이르렀다. (당시의 農會는 地主團體라 할 정도로 쌀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음) 또한 農林省에서도 그 대책으로서 市場의 근본적 조사와 생산자 옹호라는 의미에서 생산자와 도시의 시장과의 직접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狀況속에 하나의 方策이 안출되었는데, 農會가 그 소속의 생산자를 대신하여 大都市市場 所在地에 常時 駐在하는 직원을 파견, 產地와의 연락을 취하며 出荷品の 都賣商(問屋)과의 거래에 대한 모든 심부름을 해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발족을 보게 된 것이 1921年 九州 7縣 農會聯合 販賣斡旋所가 맨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이어서 東京등 5개의 地區 聯合斡旋所가 세워졌다. (이 斡旋所는 日本에서의 소비지에 마련된 판매관계의 생산자기관의 元祖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地域에서의 集出荷體制를 産業組合<sup>35)</sup>에 앞서 조직화한 것이며 1920年代 後半의 靑果物主產地 形成은 農會의 판매알선사업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누누이 말하여 온 바와 같이 中央都賣市場法을 배경으로 하여 제도적으로 진전되고 있던 都賣業者의 組織化에 대응한 생산자측의 대표기관으로서 전국의 靑果物產地를 統制하고 需給과 價格의 안정을 도모하는 기관은 별도로 없었는데, 이러한 일을 農會가 담당하게 된다. 즉 上記한 바와 같은 地方農會經營의 판매알선소가 1929년에는 전국 연합회인 帝國農會로 一元化되어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러면 먼저 地區 聯合販賣斡旋所가 설립될 무렵의 그 業務를 간추려 보기로 하자.

앞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生産者의 직접거래에 따른 不安是正을 위한 施設으로써 설립된 것이므로 그 주요 사업은 대략 다음과 같은 3가지 업무로 좁혀 운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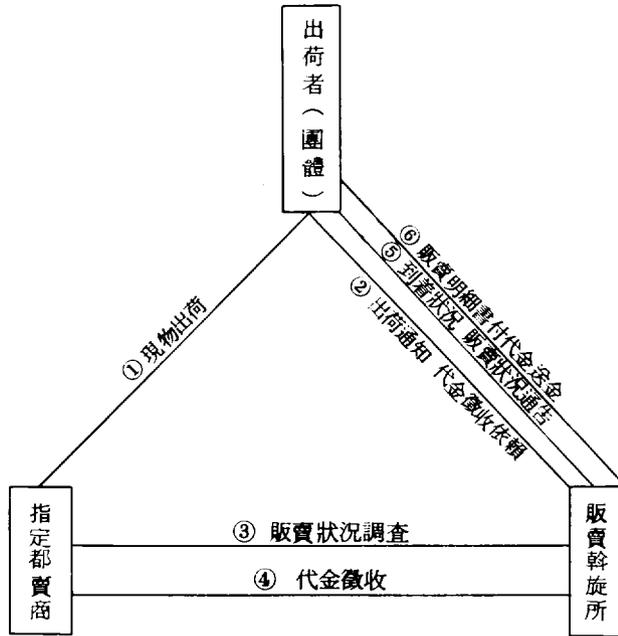
첫째의 업무는 매일의 市況調査 實施이며, 둘째는 實物의 판매 알선이고, 셋째는 생산자에 대한 계몽지도였다. 이 세번째의 일의 내용은 생산자에 대하여 시장에서의 판매 실태를 알려줌과 동시에 共同出荷에 따른 產地態勢를 갖추기 위한 產地에서의 강습회, 협의회등을 열어 거래에 관한 계몽지도를 하였다. 참고로 판매알선의 實務體系를 보면 다음〈그림Ⅲ-1〉과 같다.

34) 영속적인 전국농업단체로서 최초의 것은 1881년에 결성된 農會이다.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1910年 法制化 實現) 農民의 利益代表機關으로 각종 정부의 농정상의 시책에 대한 자문에 답하는 일과 제견의를 하는 것이 주업무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米價問題가 있게 되면 농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단체로서 산업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판매알선사업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35) 産業組合 즉 小農民의 協同組合은 법제화되기 전에 自生的인 여러 형태가 있었지만 1900년에 産業組合法이 성립하였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각별한 육성보호정책을 취하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육성은 1910年代에 들어서서부터이다. 그래서 당시 산업조합의 힘은 미미하였다.

< 그림 II - 1 >

販賣斡旋의 實務



그 후 地區聯合販賣斡旋所(6個所)를 接收하여(1929年)帝國農會의 판매알선소로 신설되어(名古屋, 京都) 그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그 사업방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京都都賣市場開設後の 市場去來를 고려하여 그 기본대책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첫째 競賣時에 立會하는 일이다. 中央都賣市場의 開設에 따라 代金回收業務는 필요없게 되었지만 競賣의 公正을 기하기 위해 競매에는 반드시 출하자의 대표가 立會키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不正行爲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극단으로 가격의 폭락을 가져올 경우에는 競매중지를 신청할 태세를 갖추었다.

둘째 出荷에 計劃性을 갖게 하는 일이다. 소비자의 매일의 수요량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競매 값의 폭등,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供給價의 平準化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우선 전국적인 出荷調整과 計劃輸送에 중점을 두었다.<sup>36)</sup>

셋째 생산자에게 시장거래를 인식시키는 일이다. 중앙도매시장의 기능에 대한 產地側의 인식이

36) 帝國農會는 각 출하단체의 출하품에 대한 판매알선사업으로부터 출발하여 販賣統制, 出荷調整에 까지 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즉 產地間의 출하경쟁에 의한 가격의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하협정을 알선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출하조정은 帝國農會 主導에 관계 품목별로 產地代表者(原則은 府縣農會 役職員) 등의 「自治的 協定」에 의하여 調整方策을 결의케 하여 각 산지가 이 협정을 성실하게 실행하는 것인데 帝國農會는 협정의 이행을 장려함과 동시에 시장상태를 끊임없이 조사 감시하여 협정실행의 확보를 도모하고 만약 產地情勢 혹은 시장정세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협정의 일부를 임시 변경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는 등 조정의 결실을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都賣市場制度 50年史編 さん 委員會編; 前掲書, pp. 134~135.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出荷調整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市場의 狀況을 市況通報를 발간하여 전국산지에 알리는 일이다.

네째 중앙도매시장에 관한 생산자의 利益代表의 使命을 다하는 일이다. 이것은 일상 업무랄 수는 없으나 생산자의 이익옹호를 위해 필요시에는 都賣人에 대하여 항쟁도 불사한다는 것이다.<sup>37)</sup>

이상과 같이 帝國農會가 각 出荷團體를 지도하여 생산자의 출하조직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中央都賣市場의 都賣人도 이것을 받아들여 대우할 수 밖에 없었다.<sup>38)</sup> 즉 都賣人側에서도 同一品目の 大量出荷는 競賣의 能率向上을 위해 요청되는 바였다. 또한 당시 도매시장 관리의 입장에 있던 商工省도 중앙도매시장 거래를 원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공동출하를 촉진하는 방법으로서 出荷組合의 설립 장려에 적극 나섰다. 이에 따라 出荷組合을 設立할 때에는 助成金支出의 예산조치를 요청할 정도였다. 이 조치는 판매알선의 활동과 함께 개인출하를 단체출하의 方向으로 나가게 하는데 박차를 가한 것이다. 그리고 農林省도 판매알선사업의 개시를 밀어주기 위해 정부의 助成金 增額과 農會의 새로운 販賣斡旋담당 직원을 두는데 그 봉급·여비의 전액을 보조해 주었다.<sup>39)</sup> 참고로 1930年의 利用者別 販賣斡旋所 取扱狀況(取扱高)를 보면 <표Ⅱ-5>와 같다.

<표Ⅱ-5> 利用者別販賣斡旋所 取扱狀況(1930年)

單位：千円，%

	穀 菽		果 實		菜 蔬		副 業 品		合 計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農 會	1,481	62.3	120	13.2	336	17.6	175	11.5	2,108	31.4
農業倉庫	57	2.4	—	—	—	—	—	—	57	0.8
産業組合	768	32.3	30	3.3	76	3.8	88	5.8	959	14.3
出荷組合	15	0.6	727	79.5	1,467	76.8	1,220	80.1	3,427	51.0
個 人	56	2.4	37	4.0	34	1.8	40	2.6	167	2.5
計	2,376	100	914	100	1,910	100	1,523	100	6,723	100

(註) 農林省農務局：「農務時報」28號，1931.

37) 도매시장측에서 보면 이러한 판매알선소가 설치된 것은 새로운 생산자의 利益代表 機關의 施設이 된 것이다. 그래서 도매시장이 세워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의도에서 중앙도매시장 도매인 연합회를 설립하였다. 생산자 대표인 帝國農會와 이 都賣人聯合會와의 사이에는 한 때 퍼 마찰도 생겼으나 서로 이해함으로써 얼마 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그럼에 따라 舊來의 불명량한 거래는 완전히 시정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생산자 단체의 강력한 대응에 힘입은 바 컸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38) 출하단체는 출하액에 따라 產地獎勵金の 명목으로 都賣會社로부터 받았는데 한 예를 보면(1931年) 京都青果株式會社 - 5,000円 이상 15,000円 以內 1,000, 35,000이상의 출하고에 대하여 1,000. 大阪青果株式會社 - 1000 등이다.

39) 당시 그 중심을 담당했던 勝賀瀨質은 성과의 요인을 경제단체가 아닌 지도적 단체인 점에 찾고 있으며 이와 함께 農會의 기술과 실무에 밀반입된 合理主義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勝賀瀨質：前掲書，p.35.

#### 4. 市場商人에 의한 去來組織의 改革－荷受組合運動－

여기에서의 荷受組合이란 靑果市場의 都賣商(問屋)이 組合員으로 되어 組織되고, 조합원은 조합이 취급하는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각 개개인의 荷受를 중지하여 組合이 일괄 荷受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 例外로서 個人的 荷受를 인정하는 조합도 있었다)이에 따라 조합원은 해당품목을 조합으로부터 경매로 買入하였다. (買入된 것은 자유롭게 팔 수 있음) 荷主에 대한 支拂은 組合이 일괄하였으며 모든 組合員은 連帶責任을 졌고 또한 組合의 經營은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手數料로 충당하였다. 물론 이익이나 손실은 조합원이 균등 분담하는 형태를 취했다.

이와 같이 荷受組合은 出荷者側에 있어서의 특정 과실품목의 대량출하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특정품목의 共同荷受體制로서) 달리 보면 個別로는 약한 集荷力과 信用度를 共同함으로써 荷受量의 확대를 꾀할 수 있고 都賣商(問屋)들의 荷受團體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앙도매시장이라는 去來上 새로운 體制의 導入을 전제로 한 集中 荷受의 豫行演習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荷受組合의 結成은 그 범위에 있어서 都賣商(問屋)의 合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확실히 荷受의 信用力이 增大되었고, 出荷者の 이익과도 연결되는 것이어서 都賣商(問屋)의 荷受組合 推進에 農會聯合의 각 판매알선소가 一役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40)</sup>

### Ⅲ. 結 語

明治後期에 이르면 이들 農畜水產物 生産部門에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生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農畜水產物중에서도 먼저 水産業에 封建的 生産樣式을 극복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魚市場의 構造改革이 日本資本主義에 있어서의 生鮮食料品(靑果物, 水產物, 畜產物) 市場 改革問題로서 浮上하였다. (1907년의 「市場法案」, 1912년의 「魚市場法案 要綱」등) 여기에 「魚市場法案」을 둘러싸 魚市場을 一地區 一市場 一營業者로 해야 한다는 市場 都賣商(問屋) = 前期的 商業資本과 複數市場과 複數營業者를 주장하는 生産者= 産業資本과의 항쟁이 출현하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후 이러한 生鮮食料品市場의 改革이 다시 현실의 과제로 제기되는데 그것은 1918년의 米騒動을

40) 都賣市場制度 50 年史編さん 委員會編; 前掲書, pp.138~139.

계기로 하여 나타났다. 여기에 사회정책적 관점이 시장개혁에 도입되고 「中央市場 設置要綱」이 마련된다. 이 단계에 이르러 靑果物을 취급하는 前期的 商業資本이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中央市場設置要綱」의 적극적 추진에 앞장선다. (中央市場의 設置者는 既設市場都賣商組合 團體에 營業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건의등)

이렇게 하여 利害 妥協의 產物로서 中央都賣市場法은 1923年 制定되고 또한 1927年에 中央都賣市場(京都市를 위시하여)이 개설된다. 그러니까 中央都賣市場法은 都賣業者를 單數로 혹은 複數로 할 것이나, 都賣業者가 되는 者를 都賣商(問屋商人) = 前期的 商業資本으로 혹은 生産者 = 産業資本으로 할 것이나를 밝히지 않은 채(個個 都市의 中央都賣市場이 해결되어야 할 일로써) 성립된 것이다. 그래서 소위 單複問題를 불러 일으켰지만<sup>41)</sup> 東京을 제외하면 그외 대도시는 市場 都賣商(問屋商人)을 單數로 하는 都賣人 = 荷受會社가 主體로 되었다. 즉 中央都賣市場의 都賣業者는 單一의 都賣商(問屋商人) = 前期的 商業資本을 中心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成立時的 範疇的인 측면에서) 그러나 市場法은 前期的 商業資本을 排除하여 이것을 近代的 商業資本으로의 轉化를 의도하였음은 물론이다. 그 機構的 變容을 보면 하나는 差益商人으로부터 手數料商人化에의 機能變化이고 또 하나는 流通手段(특히 市場施設)의 私的(商人)資本에 의한 投資로부터 公共投資에의 변화인 것이다.

이상 本小論은 1920年代 以後 中央都賣市場의 成立, 發展期를 中心으로 한 構造的 特質을 고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후 즉 高度成期를 中心한 고찰은 달리 할 수 밖에 없다.

41) 都賣人 單複問題外에 中央都賣市場과 類似市場의 關係問題가 있다. 즉 類似市場을 전부 폐쇄해야 할 것인지 않아야 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정부측은 類似市場의 營業은 원칙적으로 자유라고 한데 대하여 業者側은 유사시장의 전면폐쇄와 中央都賣市場에의 全具收容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市場法 6條, 7條는 보상에 의해 在來市場을 폐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絕對的 閉鎖主義는 아니었으며 또한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개시 이후에 있어서 도매시장과 유사의 업무를 행하는 시장의 신설을 금지한다고 하는 규정도 없었다. 이는 適正·完全한 사업계획에 의해 指定區域內의 在來市場을 모두 정비 흡수해야 한다는 것을 理想으로 하고 市場開設後에 있어서는 府縣에 의한 市場取締規則의 적정한 運用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대부분 대도시의 중앙도매시장은 당초부터 野市的 外郭部市場을 收容對象外로 하고 할 수 없는 一部를 未收容市場으로서 存置하였다. 다만 東京市는 一本場, 6分場 10配給所 計 17市場으로 구성되는 中央都賣市場網을 형성하여 60에 가까운 外郭部 영세시장을 포함한 지정구역내 재래시장의 전부를 정비 수용하였다.